

##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장학지원팀, 2017.9.29.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성대학교 (아래에서는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63조에 따라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2.)

제2조(적용범위) 우리 대학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6.8.12.)

제3조(지급대상) ①교내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6.8.12.)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입학 시 성적이 우수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
  4.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조달이 곤란한 사람
  5.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임원포함)의 직계자녀
  6. 학생자치기구 등의 운영에 공로가 많은 사람
  7. 우수 체육특기자
  8.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9. 각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직계자녀
  10. 기타 총장이나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교외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관계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 등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외장학금 장학생 선발에 따른 기준」에 의해 선발한다.(개정 2016.8.12.)

###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설치와 구성)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아래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3-3-1~2

한다.(개정 2016.8.12.)

1. 위원회는 교육연구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조정처장, 입학관리처장, 대외협력처장, 행정지원처장, 문화홍보처장, 취업진로처장 및 각 단과대학장이 추천한 교수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개정 2012.12.18., 2016.8.12.)
2. 위원회의 제반업무는 장학지원팀에서 맡아 처리한다.(개정 2016.8.12., 2017.9.29.)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각 단과대학 추천교수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8.12.)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정책
2.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액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신설 2011.12.29)
5. 장학기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학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6.8.12.)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매학기 시작 1개월 전후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3장 장학금의 등급 및 종류

제8조(장학금의 등급) ①교내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4.14)

1. S급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2. A급 : 수업료 전액
3. B급 : 수업료 전액의 1/2
4. C급 : 수업료 전액의 1/3
5. D급 : 수업료 전액의 1/4
6. E급 : 수업료 전액의 2/3

## 7. F급 : 소정액

②교외장학금은 「관계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 등에 의해 구분한다.(신설 2011.12.29., 개정 2016.8.12.)

제9조(장학금의 종류) ①교내 장학금의 종류와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아래에서는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로 정한다.

1. (삭제 2016.8.12.)
2. (삭제 2016.8.12.)
3. (삭제 2016.8.12.)
4. (삭제 2016.8.12.)
5. (삭제 2016.8.12.)
6. (삭제 2016.8.12.)
7. (삭제 2016.8.12.)
8. (삭제 2016.8.12.)
9. (삭제 2016.8.12.)
10. (삭제 2016.8.12.)
11. (삭제 2016.8.12.)
12. (삭제 2016.8.12.)
13. (삭제 2016.8.12.)
14. (삭제 2016.8.12.)

②교외장학금의 장학생 선발, 지급액,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등은 장학금 제공자 또는 관계기관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외장학금 장학생 선발에 따른 기준」에 의해 선발한다.(개정 2009.1.7., 2016.8.12.)

1. (삭제 2016.8.12.)
  2. (삭제 2009.1.7.)
- ③(삭제 2016.8.12.)

## 제4장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

제10조(지급방법) 교내·외의 각종 장학금은 특별한 규정 또는 조건이 없으면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지원

###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3-3-1~4

할 수 있는 장학금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장학금
2. 멘토링장학금
3. 생활비, 교육훈련비, 연수체제비, 기숙사비(개정 2016.8.12.)
4. (삭제 2016.8.12.)
5. (삭제 2016.8.12.)
6. (삭제 2016.8.12.)
7. 창업장학금(신설 2015.2.13)
8. 글로벌역량지원장학금(신설 2016.8.12.)
9. 취업역량강화장학금(신설 2016.8.12.)
10. 교육역량강화장학금(신설 2016.8.12.)
11. 현장실습장학금(신설 2016.8.12.)
12. 하나도우미장학금(신설 2016.8.12.)
13. 포상·시상장학금(신설 2016.8.12.)
14. 특별장학금(신설 2016.8.12.)
15. 기금장학금(신설 2016.8.12.)
16. 도서구입보조비(신설 2016.8.12.)
17. 학업장려비(신설 2016.8.12.)
18.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장학금(개정 2016.8.12.)  
(조개정 2011.12.29., 2016.8.12.)

#### 제11조 (삭제)

- 제12조 (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의 제한) ①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한 기간 안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성적우수장학금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6.8.12.)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지급 받을 수 없다.(개정 2016.8.12.)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개정 2016.8.12.)
  2. 휴학생(근로장학생 제외)(개정 2014.4.14.)
  3.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사람(개정 2016.8.12.)
  4. 시행세칙 제2조(종류와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개정

2006.12.6., 2016.8.12.)

5. 자퇴자 또는 제적자(신설 2014.4.14)

6. 그 밖의 학칙위반자(개정 2016.8.12.)

③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9.1.7., 개정 2016.8.12.)

제13조 (삭제 2009.1.7.)

제14조(장학금의 반환) 장학금을 수혜한 사람이 해당 학기에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14., 2016.8.12.)

제15조(수혜기간과 제한) 장학금의 수혜는 해당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디자인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5.16., 2016.8.12.)

제16조(지급절차) ①교내장학금 수혜사실은 등록금고지서에 표기하여 통보한다. 다만, 등록기간 이후에는 장학생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11.12.29., 2014.4.14)

②(삭제 2016.8.12.)

제17조 (삭제 2014.4.14.)

제18조(준용) (삭제 2016.8.12.)

## 부 칙

1. 이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8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6. 이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장학업무 전산화가 실현될 때까지는 장학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7. 이 개정규정은 199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3-3-1~6

8. 이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9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99학년도 이전 전체 수석 입학자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11. 이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9.10. 개정)

이 규정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12.29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12.18 개정) <직제규정>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생략

제 3 조 (타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장학금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입학홍보처장, 대외협력처장, 행정지원처장”을 “입학관리처장, 대외협력처장, 행정지원처장, 문화홍보처장”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부 칙(2013.5.16 개정)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14 개정)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3 개정)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13 개정)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8.12. 개정)

①(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에 따른 타 규정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타 규정에서 명시된 「장학금 지급 규정」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2017.9.29. 개정)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